

홍콩 식품표시(상미·소비기한 관련)제도

홍콩 식품표시제도 중 상미·소비기한 표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홍콩의 기한 표시

홍콩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 규정 별표 3(포장 식품의 표시)의 4항에 따라 포장 식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미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상미(best before)” 또는 “소비(use by)”기한 표시(별표 3의 4항)

- (1) 포장 식품에는 다음의 적절한 품질유지 표시를 읽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a) (b)목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미”(best before, 此日期前嚴佳)기한
 - (b)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패되기 쉬워서 짧은 기간만 지나도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포장 식품의 경우에는 “소비”(use by, 此日期前食用)기한
- (2) “상미”(best before, 此日期前嚴佳)기한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a) 영어로 “best before”와 한자로 “此日期前嚴佳”라는 문구 뒤에, 적절히 저장하는 경우 식품의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하며

- (b) 그 날까지 식품의 특정 품질특성을 유지하려면 지켜야 할 저장조건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소비”(use by, 此日期前食用)기한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a) 영어로 “use by”와 한자로 “此日期前食用”이라는 문구 뒤에, 적절히 저장하는 경우 식품의 소비를 권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하며
 - (b) 그 날까지 식품의 품질특성을 유지하려면 지켜야 할 저장조건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4) “상미”(best before, 此日期前嚴佳)기한은 아라비아 숫자 또는 영어와 중국어로 나타내야 하며, (7)항을 조건으로 하여 일, 월, 년을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 (a)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식품의 경우에는 기한을 일, 월로 순서대로 표시할 수 있다.
 - (b)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3개월이 넘고 18개월 이하인 식품의 경우에는, 기한 앞에 영어 “end”와 바로 뒤에 한자 “低”를 표시한다면 기한을 월, 년으로 순서대로 표시할 수 있다.
 - (c)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이 넘는 식품의 경우에는 기한을 월, 년으로 순서대로 표시하거나 또는 기한 앞에 영어

“end”와 바로 뒤에 한자 “低”를 표시한다면
년으로 표시할 수 있다.

- (5) “소비” (use by, 此日期前食用)기한은 아라비아 숫자 또는 영어와 중국어로 나타내야 하며, (7)항을 조건으로 하여 일, 월을 순서대로 또는 일, 월, 년을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 (6) “상미” (best before, 此日期前嚴佳)기한 또는 “소비” (use by, 此日期前食用)기한은 식품 표시에 날짜 바로 앞의 문구와 따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문구는 참조문 앞에 날짜가 표시된 곳에 있어야 한다.
- (7) “상미” (best before, 此日期前嚴佳)기한 또는 “소비” (use by, 此日期前食用)기한이 영어나 중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 월 또는 년 (가능한 경우)을 표시할 수 있는 순서에는 제한이 없다.

2. 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

별표 4에서는 상미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11가지 품목을 정하고 있다.

별표 3의 4항의 적용 제외 품목(별표 4)

- 과세품조례(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제53조에 따라 측정하여 알코올 농도가 부피로 1.2%를 초과하는 포장 식품
- 즉시 소비를 위해 케이터링 시설에서 파는 포장 식품
- 단일 품목으로 판매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꾸민 형태로 싼 과자류 제품
- 개별적으로 싸고 더 포장하지 않은 단일 품목으로 판매하기 위한 저장 과일
- 신선 과일류와 신선 채소류
- 단일 원료만을 발효하여 만들고 다른 재료를 첨가하지 않은 식초

- 구운 소금
- 방부제 외의 다른 재료를 첨가하지 않은 설탕
- 심도 냉동(급속 냉동 포함)식품
-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이 넘는 식품
- 추잉껌과 다른 유사 제품

이 중에서 심도 냉동(급속 냉동 포함)식품 및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이 넘는 식품에 대하여 별표 3의 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1996년 2월 16일자 홍콩 관보에서 폐지토록 개정 고시되었으나 적용은 유보되어 있었으며 1999년 제 53호 법률 공고(1999. 2. 12)에 따라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위반 및 처벌

- (1)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약품을 판매를 위하여 광고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조하는 사람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5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 (1A) 별표 3의 목적에 따라 표시한 식품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5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 (1B) 식품의 표시에 원래의 책임을 갖는 제조업자나 포장업자가 아니면서 별표 3의 목적에 따라 표시를 한 식품의 표시를 변조, 제거, 말살하는 사람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5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 (2) 광고 출판에 관하여 (1)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피고는 광고 출판 또는 출판의 조정을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출판할 광고를 직업상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3)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은 포장 식품을 판매를 위해 소지하여 (1)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피고는 식품의 판매를 위한 제공 전에 식품에 그러한 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1B)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피고는 주장된 위반행위에 대해 변조, 제거 또는 말살이,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변조, 제거 또는 말살할 수 있는 사람의 허가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요약

심도 냉동(급속 냉동 포함)식품과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이 넘는 식품은 “상미(best before)” 또는 “소비(use by)” 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1996년에 폐지하도록 개정 고시되었으나 시행은 유보되어 있다.

1999년 제53호 법률 공고에 따라 1999년 6월 1일부터 이 유보 조항을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심도 냉동 식품과 특정 품질특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18개월이 넘는 식품에도 1999년 6월 1일부터는 상미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을 받게 된다.